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45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박균택

이성윤 · 윤준병 · 민병덕

허영 · 오세희 · 이수진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며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적심사원) ① 이 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
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
로 국적심사원을 둔다.

② 국적심사원에 원장과 국적심사관을 둔다.

③ 국적심사원에 제1항에 따른 심사와 조사·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
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적심사원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 “장에게”를 “장과 국적심사원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 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u>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u> --- ----- ----- ----- -----. ② <u>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u> ----- -----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적심사원) ① 이 법 <u>에 따른 신청 · 신고에 대한 심</u> <u>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 · 연구</u> <u>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u> <u>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사</u> <u>원을 둔다.</u> ② <u>국적심사원에 원장과 국적심</u> <u>사관을 둔다.</u> ③ <u>국적심사원에 제1항에 따른</u> <u>심사와 조사 · 연구, 그 밖의 사</u> <u>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u> <u>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u>장에게</u> 위임할 수 있다.	<u>④ 국적심사원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 ----- ----- ----- -- <u>장과 국적심사원장에게</u> --- -----.
---	---